# 개 인 정 보 보 호 위 원 회 제 2 소 위 원 회 심의 · 의결

**안 건 번 호** 제2024-223-711호

안 건 명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피 심 인 (사업자등록번호: )

대표자

의결연월일 2024. 11. 27.

# 주 문

1.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한다.

가. 과 태 료 : 1,800,000원

나. 납부기한 :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

다. 납부장소 :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

# 이 유

#### I. 기초 사실

피심인은 「개인정보 보호법」(법률 제19234호, 2024.3.15. 시행, 이하 '보호법'이라 한다) 제2조제6호에 따른 공공기관으로,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이며 일반현황은 다음과 같다.

#### < 피심인의 일반현황 >

피심인명	사업자등록번호	대표자 성명	주소	직원 수

#### Ⅱ. 사실조사 결과

#### 1. 조사 배경

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피심인의 개인정보 유출신고('24.2.25.)에 따라 사실 조사를 진행('24.3.20.~10.24.)하였으며, 피심인의 보호법 위반행위와 관련된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.

# 2. 행위 사실

# 가. 개인정보 수집.이용 현황

피심인은 2024년 2월 기준 정보를 수집.보관하고 있다. 을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

개인정보파일	수집ㆍ이용 항목	수집일	보유건수(명)

# 나. 개인정보 유출 관련 사실관계

# 1) 유출 규모 및 항목

피심인은 를 홈페이지에 게시하며 총 50명의 성명 등 개인 정보(민감정보 포함)<sup>\*</sup>를 유출하였다.

\* 해당되는 정보( , , , 대상, 대상, 예정)

# 2) 유출인지 및 대응

일시			유출 인지 및 대응 내용				
2024.	2.23.	10:00경	'를 홈페이지에 게시				
		10:06	민원으로 내용 수정 후 재게시				
		10:20경	로부터 연락 받은 후 개인정보 유출 인지				
		10:26경	해당 자료 삭제 후 수정 게시				
		18:12	가 운영하는 ' '에도 게시된 것을 확인(직원)				
		19:00	에 자료 삭제 요청(18:44) 및 확인(19:00)				
	2.24.	-	침해사고 대응팀 소집 및 유출 통지 내부 협의				
		14:00~ 19:00	정보주체( )에게 유출 통지(전화, 문자)				
		20:13	에게 를 통해 유출 통지				
		22:30	, 개인정보위에 유출신고				
	2.26.	-	사과 서한문 전송				
	2.26.	-	전체 대상 개인정보보호 및 2차 피해예방 안내문 발송				
	2.27.	-	개인정보 처리방침 현행화				
	3.4.	-	전직원 대상 개인정보보호 교육 및 활용				
	3.8.	-	감사관실 감사 수감				
	3.18.	-	정보보안 자체 점검				
	3.22.	-	대상 개인정보보호 교육 연수물 배포				
2024	3.27.	-	대상 2차 피해여부 확인 및 안내( 설명회 시)				

일시	유출 인지 및 대응 내용
4.3	2024학년도 개인정보보호 내부관리계획 수립

# 3) 유출 경위

피심인은 2024학년도 를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과정에서, 담당자의 실수로 에 게시 대상이 아닌 자료(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)를 포함하여 게시하였다.

# 3. 개인정보의 취급·운영 관련 사실관계

# 가. 개인정보(민감정보 포함)의 안전성 확보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

피심인은 들의 개인정보(민감정보 포함)가 포함된 자료를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권한이 없는 자가 개인정보를 열람하는 등 개인정보를 유출한 사실이 있다.

# 4.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 수렴

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4년 10월 29일 피심인에게 예정된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송부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였고, 피심인은 위반 사실을 인정하며 선처를 요청하였다.

# Ⅲ. 위법성 판단

# 1. 관련 법 규정

보호법 제23조제2항은 "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 각 호에 따라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민감정보가 분실·도난·유출·위조·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제29조에 따른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"라고, 같은 법 제29조는 "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·도난·유출·위조·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, 접속기록 보관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·관리적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."라고 규정하고 있으며, 같은 법 시행령(대통령령제33723호, 2023.9.15. 시행) 제30조제1항은 "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29조에따라 다음 각 호의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해야 한다"라고 규정하며, "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제한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조치(제2호)"과 "그밖에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제한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(다목)"를 규정하고 있다.

또한 「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」(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 2023-6호, 2023.9.22. 시행, 이하 '고시') 제6조제3항은 "개인정보처리자는 처리하는 개인정보가 인터넷 홈페이지, P2P, 공유설정 등을 통하여 권한이 없는 자에게 공개되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처리시스템, 개인정보취급자의컴퓨터 및 모바일 기기 등에 조치를 하여야 한다."라고 규정하고 있다.

# 2. 위법성 판단

# 가. 개인정보(민감정보 포함)의 안전성 확보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[보호법 제23조제2항, 제29조]

개인정보처리자는 처리하는 개인정보가 열람 권한이 없는 자에게 공개되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접근통제 조치를 하여야 하나, 피심인이 업무부주의로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열람 권한이 없는 제3자에게 공개되도록 한 행위는 보호법 제23조제2항, 제29조, 같은 법 시행령

제30조제1항, 고시 제6조제3항 위반에 해당한다.

#### Ⅳ. 처분 및 결정

#### 1. 과징금 면제

피심인의 보호법 제23조제2항, 제29조 위반행위에 대해 같은 법 제64조의2제1항제9호에 따라 과징금 부과 대상이나, 피심인의 행위는 정보주체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거나 경미한 경우로 피심인이 위반행위를 시정하고 유출통지·신고를 위반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같은 조 제5항제4호, 같은 법시행령 제60조의2제5항, 「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」(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3-3호, 2023.9.15. 시행) 제4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.

#### 2. 과태료 부과

피심인의 보호법 제23조제2항, 제29조 위반행위에 대해 같은 법 제75조 제2항제5호,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 및 별표2 제2호아목, 「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」(개인정보보호위원회지침, 2023.9.15. 시행, 이하 '과태료 부과지침')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한다.

#### 가. 기준금액

보호법 시행령 제63조의 [별표2]는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위반 횟수에 따라 기준금액을 규정하고 있고, 피심인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보호법 제23조제2항, 제29조 위반행위에 대해 1회 위반에 해당하는 과태료인 600만원을 적용한다.

#### < 과태료 부과기준 >

이 비사 이	77 870	과태료 금액(단위: 만원)			
위반행위	근거 법조문	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이상			
아. 법 제23조제2항, 제24조제3항, 제25조제6항, 제28조의4제1항 또는 제29조를 위반하여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	법 제75조 제2항제5호	600	1,200	2,400	

#### 나. 과태료의 가중 및 감경

#### 1) 과태료의 가중

과태료 부과지침 제7조제1항은 "당사자의 위반행위의 정도,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[별표 3]의 가중기준에 따라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이내에서 가중할 수 있다."라고 규정하고 있다.

피심인의 보호법 제23조제2항, 제29조 위반행위는 과태료 부과지침 제7조제1항의 과태료 가중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기준금액을 유지한다.

#### 2) 과태료의 감경

과태료 부과지침 제6조는제1항은 "당사자의 위반행위의 정도,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[별표 2]의 감경기준에 따라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."라고 규정하고, 같은 조 제2항은 "[별표 2]의 각 기준에 따른 과태료 감경 시 그 사유가 2개 이상 해당되는 경우에는 합산하여 감경하되, 제2호 1) 및 2)에 해당하는 사유가 각 2개 이상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고, 최종 합산결과 기준금액의 100분의 90을 초과할 수 없다."라고 규정하고 있다.

피심인의 경우, '비영리법인인 경우(30%이내)'에 해당하여 기준금액의 30%를

감경하고, '조사에 적극 협력한 경우(20% 이내)', '시정을 완료한 경우(20% 이내)'에 해당하여 기준금액의 40%을 감경하여 기준금액의 총 70%를 감경한다.

< 과태료 부과지침 [별표 2] - 과태료 감경기준 >

기준	감경사유	감경비율	
업무	1. 위반행위자가 비영리법인, 비영리단체 등인 경우로서 무보수성, 공익성,	기준금액	30%
형태	비영리성 등을 고려할 때 과중하다고 인정되는 경우	30% 이내	
조사	보호위원회의 조사기간 중에 일관되게 행위사실을 인정하면서 위법성	기준금액	4.00%
협조	판단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출하거나 진술하는 등 조사에 적극 협력한 경우	20% 이내	
자진 시정	1. 과태료의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간이 종료되기 이전에 위반행위를 중지하는 등 시정을 완료한 경우	기준금액 20% 이내	40%

#### 다. 최종 과태료

피심인의 보호법 제23조제2항, 제29조 위반행위에 대하여 기준금액에서 가중·감경을 거쳐 총 18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
< 과태료 산출내역 >

위반행위(세부내용)	기준금액	가중액	감경액	최종 과태료
안전조치의무 위반	600만 원	-	420만원	180만원

#### V. 결론

피심인의 보호법 제23조제2항, 제29조에 관한 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75조 제2항제5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.

# 이의제기 방법 및 기간

피심인은 이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,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개인정보보호 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.

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피심인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, 개인정보보호 위원회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효력을 상실하고 관할법원(피심인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)이 과태료 재판 절차에 따라 결정한다. 이 경우 피심인은 관할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이후 재판 결과에 따라 과태료의 납부 의무를 부담한다.